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 『2024년도 예산(안)』 - 감사담당관

#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2. 6.

行政委員會專門委員金玉然

# 『2024년도 예산(안) - 감사담당관』 檢討報告書

### 1. 경 과

의안 제279호로 2023년 11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2024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예산규모(총괄)

가.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b>-</b>	예산액(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893,542,420	829,319,830	64,222,590	7.74
일반회계		870,046,535	797,449,726	72,596,809	9.10
특별회계		23,495,885	31,870,104	△8,374,219	△26.28
의료급여		540,000	544,000	△4,000	0.74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지역	45,300	0	45,300	순증
주 차 장	-	21,617,585	30,530,812	$\triangle 8,913,227$	$\triangle 29.19$
건축안전		1,293,000	795,292	497,708	62.58

## 나. 주요재원(총괄)

○ 일반회계 870,046,535천원
- 지방세수입 197,688,180천원
- 세 외 수 입108,327,190천원
- 지방교부세 13,928,000천원
- 조정교부금 등 88,752,999천원
- 보 조 금 386,350,166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000,000천원
○ 특별회계 23,495,885천원
<ul><li>○ 특별회계</li></ul>
- 의료급여기금 540,000천원
- 의료급여기금 ······ 540,000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5,300천원
- 의료급여기금

### 5.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편성 내역

가. 세입예산: 해당없음.

###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쪽수	세부사업	2024예산(안)	2023예산	증감액
합 계		350,459	316,478	33,981
215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134,690	145,930	△11,240
215	행정감사 실시(자체, 외부기관)	44,511	56,455	△11,944
215	구정 청렴도 향상	68,572	67,868	704
216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2,420	2,420	0
216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13,937	13,937	0
217	적정한 계약원가 심시추진	5,250	5,250	0
217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	1,900	1,900	0
217	조사업무관리	1,900	1,900	0
217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	36,400	17,560	18,840
217	인권증진사업	36,400	17,560	18,840
218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 민원 관리	62,860	15,560	47,300
218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	53,800	6,500	47,300
218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3,300	3,300	0
218	감사담당관 민원실 운영	5,760	5,760	0
21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3,830	3,830	0
21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관리	3,830	3,830	0

219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 중심의 순찰 강화	13,880	13,614	266
219	예방기능을 강화한 현장중심의 순찰 활동 전개	13,880	13,614	266
219	기본경비(감사담당관)	96,899	118,084	△21,185
219	기본경비	96,899	118,084	△21,185

#### 다. 세출예산 규모

구 전체예산의 0.04%인 3억 5,045만원이 편성되어 2023년도 예산 3억 1,647만원 대비 3,398만원이 증액(10.74%)됨.

#### 라. 주요 사업 증감내역 및 검토

- p215 행정감사 실시(자체,외부기관)는 자체감사활동 추진 및 외부기관 감사 수감 등을 통해 업무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비리 사전예방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194만원 감액된 4,451만원 편성.
  - 이는 직원 인원 감소(26명→24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192만원 감액,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322만원 증액,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미배치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편성 되었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324만원이 미편성됨이 주요 요인임.
- p217 인권증진사업은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위원회 운영, 구민 안전지킴이단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인권 도시 영등포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884만원 증액된 3,640만원 편성.

이는 제3기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 및 사무관리비가 216만원 감액됨이 주요 요인임.

○ p218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의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4,730만원 증액된 5,380만원 편성.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개정으로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해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고질·반복민원 등 운영 230만원, 행정전문가 자문료 4,500만원이 각각 신규편성됨에 기인함.

마. 명시이월사업 : 해당 없음.

바. 주민참여예산 : 해당 없음.

사. 기금 : 해당 없음.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 ·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 · 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있다.